

가

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규정

제정 1970. 4. 10. 제 26호 개정 1980. 3. 17. 제167호 개정 1983. 4. 5. 제212호
개정 1988. 10. 20. 제333호 개정 1993. 4. 22. 제468호 개정 1995. 6. 12. 제539호
개정 2011. 3. 15. 개정 2012. 2. 2. 개정 2015. 3. 10.
개정 2020. 10. 23. 개정 2021. 1. 28.

제 1 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① 연구소는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률, 환경 및 공간체계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발전모형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연구사업을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의회구성, 선거제도 등 제반 정치형태 조사분석연구
2.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제반정책과 전략의 연구
3. 지역사회구조 및 가치구조 등의 내용과 발전에 관한 연구
4. 향토문화, 민속 등 발굴조사 연구
5. 지역개발에 관련된 법령, 판례, 관습 등의 조사연구
6.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회교육
7. 각종 도시 및 지역개발과 그 계획에 관한 연구
8. 지역의 환경관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9.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10.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술 및 정책 연구
11.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 에너지 등에 관한 학술 및 정책 연구
12. 노동시장 구조 분석 및 인적자원 관리 등에 관한 학술 및 정책 연구
13. 상기 각호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행정기관의 자문 및 계획분야 전문인 교육

14.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 및 사업

제 4 조(조직) ① 연구소에 소장, 자문위원, 간사와 기획실, 경제개발연구부, 사회개발연구부,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부, 정치문화연구부 및 교육개발연구부를 둔다.

- ② 소장은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소장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사업 책임을 맡고, 임기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과 연동한다.
- ④ 실과 각 부에는 장을 두며, 실장과 부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⑤ 기획실은 연구소 업무를 기획관리 하고 각 부는 소관전문분야의 연구사업을 분장한다.
- ⑥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 업무를 담당한다.
- ⑦ 도시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전임연구원과 위촉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 ③ 전임연구원과 위촉연구원을 두며,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위촉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 ④ 겸임연구원은 연구소 이외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사로 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 ⑤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이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중에 연구소에 방문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 인사로 하고, 박사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소지해야 한다.

제 6 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 3. 실장, 부장 및 자문위원의 위촉동의
 - 4. 연구결과평가 및 논문집발간
 - 5. 기타 소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 7 조(연구업적보고) 연구소장은 매학기초에 연구소의 연구계획(예산서 첨부)과 전학기 연구업적(결산서 첨부)을 총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계획이 연간계획일 때는 학기말에 진행사항만 보고할 수 있다.

제 8 조(연구발표) 연구소장은 매학기말 연구실적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연구계획일때는 매학기말에 발표할 수 있다.

제 9 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국비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70. 4.10)

제 1 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규정 시행전의 법률문제연구소, 사회개발연구소, 호남경제문제연구소, 호남문화연구소, 파라과이 경제문제연구소는 이 연구소에 병합되므로 그 규정등은 폐지하며, 그 연구소는 재산과 일절의 문서를 이 연구소에 인계한다.

부 칙 (1980. 3.17)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15)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2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1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15)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1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23)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8)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개발연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5. 10. 개정 2008. 5. 30. 개정 2011. 3. 15.
개정 2012. 2. 2. 개정 2015. 3. 10. 개정 2016. 3. 11.
개정 2021. 1.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학술지 『지역개발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논문의 모집, 심사의뢰, 게재 여부의 결정, 발간 횟수 및 발간 시기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1인 이상, 편집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개최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매호별 학술지 발간 전에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출판예정인 논문 목차를 회람시켜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편집위원들에게는 전자메일로 최종 게재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학문적 업적과 전문성이 뛰어나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선정) 편집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며 학술지 발간을 위한 사업 활동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성을 가진 자를 소장이 지

명한다.

- ③ (부편집위원장의 선정) 편집위원장을 보조하여 학술지 발간을 위한 사업 활동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성을 가진 자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지명한다.
- ④ (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되며 전문성 및 학술활동 능력이 뛰어난 인사를 지역을 고려하여 20인 내외로 선정한다.
- ⑤ (편집위원 직무수당) 소장은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에게 임명장을 발부하고, 위촉기간 중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과 연구분야가 일치한 전문가들 중에서 2인 내지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심사위원 2인 내지 3인 중 적어도 1인은 편집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소장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 ④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투고 논문의 질과 형식이 현저히 낮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편집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논문의 심사를 기각하고 투고자에게 심사 기각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논문심사기준 및 게재 판정)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4단계(A, B, C, F)로 평가한다.

- 1. 연구항목 평가
 - 가. 연구 주제의 적합성 (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 나. 연구 내용의 독창성 (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 다. 연구 방법의 타당성 (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 라. 논문 구성의 충실성 (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 마. 연구 결과의 유용성 (현실적 시사점 포함)
 - 바.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논문 작성기준 부합여부)
 - 2. 논문초록 평가
 - 가. 논문내용의 포괄성, 표현의 적절성, 외국어 표기의 정확성
- ② 최종 심사 판정은 A, B, C 및 F의 네 등급으로 나누되 각 등급에 다

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1. A 등급 (게재) : 원고대로 게재 또는 편집상의 수정 후 게재
 2. B 등급 (수정후 게재) : 소폭 수정 후 재심사 없이 게재
 3. C 등급 (수정후 재심) : 대폭 수정 후 심사자 재심 필요
 4. F 등급 (게재 불가): 게재 부적합
- ③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각 심사위원은 심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떠한 등급을 부여하더라도 심사소견서가 없는 경우에 심사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논문게재 여부를 판정하되, 2~3인의 심사위원에 대한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판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위원 수 게재여부 판정	2명	3명
게재	AA, AB	AAA, AAB
수정후 게재	AC, BB, BC	AAC, ABB, ABC, BBB
수정후 재심사	AF, BF, CC	AAF, ABF, ACC, ACF, BBF, BBC, BCC
게재 불가	CF, FF	AFF, BCF, BFF, CCC, CCF, CFF, FFF

-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수정후 게재” 판정 논문의 게재) ①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논문의 게재 여부는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7조(“수정후 재심사” 판정 논문의 게재) ①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재심사는 “수정후 재심” 판정을 한 최초 심사위원이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재심 결과를 해당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으며,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의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④ 수정된 논문의 재심결과는 초심에서 “수정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최종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⑤ 재심 후 게재여부 판정이 다시 “수정후 재심”일 경우,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제8조(“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투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제9조(게재 확정 및 원고료) 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는 최종원고를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하며,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논문게재예정증명) 논문의 투고자에 대한 통보는 심사 결과 및 게재 확정으로 구분하되, 게재를 확정된 시점부터 편집위원장은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발간일) 학술지는 연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학술지 증정)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학술지와 요청에 따라 별쇄분을 증정한다.

제13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연구소 소유로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논문심사료) 심사위원들에게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06. 5.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3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5)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8)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개발연구』 논문의 투고 및 원고작성 규정

제정 2006. 5. 10.

개정 2008. 5. 30.

개정 2015. 3. 10.

개정 2016. 3. 11.

개정 2021. 1. 28.

제 1 조(논문 투고규정) ① 투고논문은 지역개발연구소 연구영역에 합치된 것으로 한다.

- ②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심사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④ 『지역개발연구』誌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⑤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편집위원장은 논문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을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⑦ 『지역개발연구』誌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가 소유한다.
- ⑧ 투고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제 2 조(논문 투고요령) ① 논문의 원고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연구소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한다.

- ② 논문을 투고할 때는 필자가 스스로 논문의 해당전공분야를 명시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 ③ 모든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투고자는 MS-word로 작성하는 것을 인정한다.
- ④ 논문제출시 익명심사를 위해서 별도의 표지에 논문제목, 저자성명, 소속을 한글, 한자, 영문으로 별지에 기재하고 원고에는 제목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 ⑤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고, 국문인 경우 영문초록을, 영문인 경우 국문초록을 작성한다.

- 제 3 조(원고작성지침) ① 모든 논문의 분량은 국문으로 작성한 논문은 A4 용지 20매 내외,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은 double space 2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한다.
1. 문단모양 : 왼쪽끝 0, 오른쪽 끝 0, 들여쓰기 2, 줄간격 150.
 2. 편집용지여백 : 위 25, 아래 25, 오른쪽 25, 왼쪽 25, 머리말 12, 꼬리말 0
 3. 글자모양 : 글꼴은 신명조, 크기 11, 장평 100
 4. 번호체계 : 절(節)의 구분은 절(節), 항(項), 목(目) 순으로 배열한다.
가. 절(節)은 ‘I., II., III., ...’의 순으로, 항(項)은 ‘1., 2., 3., ...’의 순으로, 목(目)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 ③ 모든 논문은 일반적인 논문의 체재를 유지하되 논문은 반드시 400-500자 내외(공백제외)의 국문초록과 150-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수식의 경우 번호매김은 장(章), 절(節)의 구분 없이 우측정렬하여 괄호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하며, 수식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log, ln, max 등의 기호는 정자체로 표기한다.
 2. $a/b + c$ 와 같이 혼돈되기 쉬운 표현은 $(a/b)+c$ 나 $a/(b+c)$ 로 명확히 표현하도록 한다.
- ⑤ 인용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치 않고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1. 예) Becker and Grossman(1994)은 ...; 김성태, 노근호(1991)의 연구에서 ...
 2. 예) Becker, Grossman, and Murphy(1994)는 ...; 김성태, 정초시, 노근호(1991)에서 ...
 3. 예) ...라고 설명하였다(Becker, Grossman, and Murphy, 1994: 15). ; ...에서 발생한다(김성태, 노근호, 1991: 156)
- ⑥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는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⑦ 각 문헌은 한글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은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의 순서는 한글과 동양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b,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⑧ 각각의 문헌의 구체적인 표시는 아래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따옴표 “ ”로 표시하고, 저서 또는 역서(그리고 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국문 또는 기타 동양문헌의 경우 이중 꺾쇠 『 』으로, 영문의 경우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한다.
 2. 저자 또는 역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준다. 단, 처음부터 책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가. 단행본의 경우
 - 예) 김승희, 신우진, 서광채, 이용훈, 『부동산학개론(개정증보판)』, 서울: 이루, 2019.
 - 예) De Chernatony, L. and M. H. McDonald, *Creating powerful brands in consumer, service and industrial markets*, Oxford: Butterworth-Heinemann, 2018.
 - 예) De Chernatony, L., McDonald, M. H., and F. Harris, *Creating powerful brands in consumer, service and industrial markets*, Oxford: Butterworth-Heinemann, 2018.
 - 나. 정기간행물 수록논문의 경우
 - 예) 김의준, 이호준, 진동영, 김별아, 지양민, 윤동근, “지진의 지역경제 손실 추정: 공간연산일반균형의 응용”, 『지역개발연구』, 제52권 제2호, 2020, pp.157-178.
 - 예) Proshansky, H. M. and A. Fabian, “Place 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1(2), 1983, pp.57-83.
 - 예) Proshansky, H. M., Fabian, A. K., and R. Kaminoff, “Place 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1983, pp.57-83.

다. 보고서 등 시리즈 단행본의 경우

예) 황영우, 『부산광역시 해안역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연구(보고서 번호: 2016-10)』,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2016.

예) Roth, B. L., *DREADDs for Neuroscientists (Report No. r20171012)*, ML: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7.

라. 편저 내 수록논문의 경우

예) 변장섭, 나주몽,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 나주몽 외(편), 『사회적경제와 지역혁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 기획도서 2,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pp.127-181.

예) Ridley-Duff, R., Seanor, P., and M. Bull, “Leadership, social and ecoentrepreneurship”, in Ridley-Duff, R., Seanor, P., and M. Bull (eds.),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 Theory and Practice*, Sage, London, 2016, pp.203-224.

마. 웹페이지

예) 지역개발연구소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crncnu.jnu.ac.kr>, 검색일: 2021.02.02.

예)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Website], Retrieved from <http://crncnu.jnu.ac.kr>, Search: 2021.02.02.

바. 번역서

예) 박현수 역, 『거대한 전환 : 우리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1991, 서울: 민음사.

- ⑨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제시한 논문샘플양식에 맞추어 논문을 작성하되, 상기한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양식에 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6. 5.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3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8)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출판 및 윤리에 관한 규정

2010. 3. 0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연구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연구윤리)

1. (연구의 객관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의 독창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은 물론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연구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이중 투고, 중복 게재, 재투고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의 공개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

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표절)

1. 표절이라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5조(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6조(중복 게재)

1. 중복 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2. 학술대회나 세미나,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등의 전부를 그대로 옮긴 논문,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경우 중복 게재로 보지 않는다.

제7조(재투고)

1.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8조(연구원의 의무)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제3조 내지 제7조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 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하여 연구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저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7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제10조 1.과 2.의 규정에 의한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5. 연구소 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3조 내지 제7조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9조 4.의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연구소 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비밀보장)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소 소장과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별 칙

제12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 본 연구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단체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2년간 본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본 연구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3)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 (4) 해당 저자가 본 연구소 연구원일 경우, 연구소 내 모든 직책이나 직위를 박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3.8.).

제2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논문투고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투고일자	년 월 일
소 속	직장	직장명:		직위:
	주소	(우)		
	연락	전 화: 전자우편:	휴대폰: 전 송:	
논문제목	(한글)			
	(영문)			
논문종류	이론연구 () 실증분석연구 () 문헌연구 () 정책논문 () 연구노트 () 기타 ()			
원고매수	원고 ()매, 그림 ()매, 사진 ()매			
〈원고 내용 요약〉				

- 투고논문은 국영문 초록과 5개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포함해야 합니다.
- 투고자는 컴퓨터 파일(file)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논문종류에서 해당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내용요약은 주어진 box 안에 요약하여 1 page가 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Tel: 062-530-1428, Fax: 062-530-0429, Email: crd@jnu.ac.kr

논문심사 평가서

심사위원	성 명	
	소속/직위	
	연 락 처	
논문제목	국 문	
	영 문	

연구항목 평가	연구 주제의 적합성 (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A () B () C () F ()
	연구 내용의 독창성 (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A () B () C () F ()
	연구 방법의 타당성 (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A () B () C () F ()
	논문구성의 충실성 (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A () B () C () F ()
	연구 결과의 유용성 (현실적 시사점 포함)	A () B () C () F ()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논문 작성기준 부합여부)	A () B () C () F ()
논문초록 평가	논문내용의 포괄성, 표현의 적절성, 외국어 표기의 정확성	A () B () C () F ()
종합심사 결과	수정 없이 게재 ()	소폭 수정 후 재심 없이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부적합 ()

(우)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Tel: 062-530-1428, Fax: 062-530-0429, Email: crd@jnu.ac.kr

논문심사료 입금 계좌번호 요청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는 [지역개발연구] 심사 및 편집규정에 의해 심사위원에게 3만원의 논문심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개발연구]지의 발간을 위하여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논문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심사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온라인 송금으로 심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금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어 심사결과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심사위원	성 명 :	소속기관 :
입금계좌	예금주 :	입금은행 :
	계좌번호 :	

지역개발연구지 편집위원장

신우진 올림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지역개발학전공 교수

Tel: 062-530-1562

Email: crd@jnu.ac.kr

『지역개발연구』 논문투고 안내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지역개발연구』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연간 3회(4월, 8월, 12월) 발행하는 정기학술지입니다. 『지역개발연구』에서 논문을 모집하고 있으며, 투고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세한 투고절차 및 논문심사 방법은 지역개발연구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1. 투고대상 - 관련분야 전문가
2. 투고분량 - A4 20매 이내
3. 논문내용 - 지역·도시·경제 및 관련분야 연구논문
4. 논문접수 - 연중 수시 접수
5. 투고문의 - 지역개발연구소 사무실
 - ◆ 전 화 : 062-530-1428, Fax : 062-530-0429
 - ◆ E-mail : crd@jnu.ac.kr
 - ◆ 홈페이지 : <http://crdcnu.jnu.ac.kr>
 - ◆ 주 소 : 61186 (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
지역개발연구 편집위원장